

제94회 제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2년 5월 14일 상오 10시 10분
2. 폐 의 : 단기 4292년 5월 14일 하오 12시 50분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5. 출석의원 :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5명
결석 강영락 의원
6. 출석공무원 :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
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, 교육, 장
7. 의사일정

◆보고사항

- (1) 제93회 회의록 통과
- (2) 목포시 기본재산 매각상황보고
- (3) 대 정병조 토지소송상황 전말보고
- (4) 시내빠-스 설치 신청에 수반한 진상 및 여론 조사보고

◆부의사항

- (1) 단기 4292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- (2) 단기 4292년도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 - 1) 제1회 수도특별회계
 - 2) 제1회 도선특별회계
 - 3) 제1회 공익전당포 특별회계
 - 4) 제1회 국민주택 특별회계
 - 5) 제1회 재건축주택 특별회계

- 6) 제1회 교육위원회 특별회계
- (3) 목포 시장 설치 조례안
- (4) 목포시 영구차 사용조례안
- (5) 목포시 묘지 및 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안
- (6) 목포시 중요재산 취득 안

8. 토의사항

◎ 제93회 회의록 통과

◇서기 박찬대

- 낭독 이의없음으로 통과

◎ 목포시 기본재산 매각상황보고

◇간사 장건식

- 경위보고

◎ 대 정병조 토지 소송상황 전말보고

◇간사 장건식

- 경위보고

◎ 시내빠-스 설치신청에 수반한 진상 및 여론조사 보고

◇김 성 균 의원

- 현재 본건 설치 희망자가 4인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운행예정 코스 및 일반시민들의 여론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가 있었고 조사원의 의견으로서 시민의 대다수가 시내 빠-스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우리 시의회 의 결의로써 관계당국에 건의토록 함이 좋은 것 같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.

◇정 응 표 의원

- 본건 부의안건 제1호로 직각(直刻) 상정 처결토록할 것을 동의하다.
- 재청...3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◎ 시내빠-스 설치 촉진 건의의 건

◇정 응 표 의원

- 본건 관계당국에 촉진 건의할 것을 동의 (재청이 있었음.)
- 김상대의원-찬성발언
-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김 창 희 의원 (긴급동의)

- 모든 입지적 조건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유달산 일대에 관광시설을 만들도록 국고보조신청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것을 긴급동의

◇정 응 표 의원

- 참고발언
- 이 문제에 대한 나관수 민의원의 구상을 소개하면서
- 재청이 있었음.
- 아울러 당 시 출신 정중섭의원에게도 협조의뢰문을 낼 것을 첨가한다.

◇김 남 진 의원

- 찬성발언
-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김 창 희 의원

- 사유기본재산 매각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으나 이에 수반한 동명동 대지 매각처분의 건을 직각 상정 토의할 것을 동의하다.
- 재청..삼청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동명동 대지 매각 처분의 건

◇김 창 희 의원

- 본건 보류중이던 김순주로부터 매각대 잔액 94만환을 조속한 시일내 징수하도록 집행부측에 건의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삼청이 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김 일 섭 의원

-방금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는 대 정병조씨 관계 토지문제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의 사례금을 비롯하여 제반 문제 등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와 협동처결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

◇김 의장

-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하 시장

- 대단히 좋은 동의라고 보아집니다.

- 본 건 처결에 있어서는 의결부와 협동하여 현지를 답사한 이후 제반 문제를 처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함이 좋으리라고 보아집니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정병조씨 토지승소분 15만평에 대한 담당 변호사의 사례금문제를 비롯하여 제반문제를 의회에서 사전에 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아지며 집행부 측에서 하등의 제안이 있는 이후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아져서 그 동의를 일응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김일섭 동의 찬성발언

◇김 성 균 의원

- 상동

◇이 정 권 의원

- 김경인 의원 의견 찬성발언

◇김 남 진 의원

- 본건 김성호씨 변호사의 노고에 대하여 사전 인사도 있기 전에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이 마당에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 같은 바 김일섭 의원의 동의와 같이 의결부와 집행부가 합동하여 사례금 등을 결정지은 다음, 상대방이 이의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의 최후 조절책은 여하히 할 것인가 의견이 있으면 말하여 주기 바란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집행부와 협동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단독으로라도 사전조사에 임하자는 것이다.

◇박 두 순 의원

- 김경인 의원 의견에 찬성발언

※ 정응표, 이정권 의원 이석(離席)

- 김일섭 의원 동의 표결결과

- 재석 13명 중 가 8표 가결

◇김 경 인 의원

-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동정에 국한한 대 행정부 질의를 전개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었음.

◇김 상 대 의원

- 현금의 동정운영상황을 일별컨대 차라리 무보수 동장 재임시보다 더 우

위를 차지한 것 같다. 근간의 지상보도를 보더라도 단시일내에 동장의 임명도 실현될 것 같으니 이제까지 동장에게 지급할 봉급예산의 축적액으로서 동장과 직원의 봉급을 증액시킬 방도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.

※ 김경인 의원의 대 행정부 질의 동의

- 삼청까지 밖에 없으므로 폐기

◇의장 김 삼 성

-부의안건 제1항부터 제6장까지 상정선언

◇박 찬 대 시정주무, 이 교위 사무장

- 제안설명

◇김 상 대 의원

- 부의사항 전안건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삼청이 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의장 김 삼 성

-산회를 선언하다.

(하오 0시 50분 현재)

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서명 날인함.

단기 4292년 5월 19일

시의원 조 양 순

시의원 김 상 태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

제 94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2년 5월 16일 상오 10시 25분
2. 폐 의 : 단기 4292년 5월 16일 하오 12시 5분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5. 출석의원 :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4명
결석 강영락, 천철수 의원
6. 출석공무원 : 시장 하동현,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
교육감 박세문

7. 의사일정

◆보고사항

- 각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
◆부의사항

-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.

8. 토의사항

◎ 각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
◇내무위원장 박 두 순 (종합 심의보고)

- 작일 개최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사,산업에서도 아직 심의결과가 내무위에 회부 안되었을 뿐 아니라 내무위 소관도 완결을 못보았으니 본회의를 일시 정회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삼청이 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속개 선언하다. (상오 11시 50분 현재)

◇박 두 순 의원

- 부의안건 전항목에 대하여 목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도중에 있으니 금차 회기를 오늘 19일까지 3일간 연장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 삼청이 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김 상 태 의원

-한국미(米)의 수출 및 민수 비료도입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당지 시민에게 막대한 이익을 받게 한 한국미곡수출조합 사업분과위원장이며 대한양비주식회사 사장 박응철씨의 공로를 사하기 위하여 당 시의회의 결의로써 감사장을 수여하 것을 긴급동의

- 재청..삼청이 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의장 김 삼 성

-제1차 회의시 김일섭 의원의 동의로써 가결된 대 정병조씨 관계 토지 조사위원회 임석희, 김일섭, 김상태, 김남진, 김성균 의원을 지명

- 내무위원회의 추천으로 김경인의원이 산업위원회로 경질되었다는 요지의 보고에 이어서 김경인 의원의 인사가 있었음.

- 산회선언하다. (하오 12시 5분 현재)

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해 자이 서명 날인함.

단기 4292년 5월 19일

시의원 조 양 순

시의원 김 상 태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

제94회 제3차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2년 5월 19일 하오 1시 20분

2. 폐 의 : 단기 4292년 5월 19일 하오 4시 0분
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
5. 출석의원 :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4명
결석 강영락, 천철수 의원

6. 출석공무원 :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
교육감 박세문

7. 의사일정

◆보고사항

- 각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
◆부의사항

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.

8. 토의사항

◎ 각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
◇내무위원 박 두 순 (종합심의 보고)

- 수특(水特), 도선특(渡船特), 공전특(公典特), 국주특(國住特), 재주특(再住特) 등 추경예산, 장(場) 설치조례, 묘지 및 화장장 사용조례 개정안, 중요재산 취득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으나, 일반회계 추경, 영구차 사용조례

는 일부 수정 통과하였으며 교위 추경예산안은 원안 비트(비토)하였습니다.

- 그 내용은

(1)영구차 사용 조례안-제2조의 1항 사용요금 5,000환을 4,000환으로 삭감, 3항의 사설묘지의 1회당 시간 3시간을 4시간으로 변경함으로써 본 조례제정의 근본 취지인 영세시민의 편익을 도모시킴과 아울러 제4조를 삭제하여 무질서한 요금 감면 제도를 철폐하자는 것입니다.

(2)일반회계 추경-전기 조례 개정에 수반한 예산의 정정 및 호적병무과 호적창고 신축비 50만환, 동 이전비 35만환, 유선각 신축비 180만환, 계 265만환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.

(3)교육위 특별회계-91년도 교육세 환부금 2,666,900환 중 영선(營繕)비 해당액 1,263,360환을 일반 경상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안 비트(비토)를 보았습니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일반회계 추경예산 상정 선언

◇김 경 인 의원

- 본건 1, 2, 독회와 아울러 축조심의까지 겸하여 심의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삼청이 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김 일 섭 의원

- 세입 영구차 사용료에서 1,000환을 삭감시켰다는 내무위의 보고에 대하여 세입을 삭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여하

◇이 정 권 의원

-조례제정안과 동시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인 것이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예산면으로 볼 때 영구차 사용 회수 177을 221회로 정정하였는데 문사위에서는 177회의 확실성 있는 기준을 전문가 등으로부터 확인하고 통과시켰

는데 내무위에서 시정한 이유 여하

◇정 응 표 의원

-내무위원장의 심의 보고에 대한 보충발언

◇김 상 대 의원

-221회로 정정한 이유 여하

◇박 두 순 의원

-제4조를 삭제함으로써 177회에 대한 221회의 차 44회 짚은 증가하리라고 보아지지 안겠는가.

◇김 창 희 의원

-내무위원회에서는 영세시민을 위한다는 견지에서 제2조의 5,000환을 4,000 환으로 감하고 제4조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하나, 이는 오히려 영세시민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. 그러므로 원안 그대로를 통과시키자는 것이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내무위의 수정안에 찬성발언

◇정 응 표 의원 규칙(발언)

- 본건 심의에 앞서 예산에 수반된 조례안을 선차로 심의토록 의사일정 변경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의장 김 삼 성

- 목포시 영구차 사용조례안 상정 선언

◇김 남 진 의원

-당초 집행부에서 본 조례를 제안할 적에, 어느 개인당사자의 증언을 듣고 177회의 기준을 두었다는 자체부터가 모순이며 영구차 개조비로 120만환을

계상한 근거는 여하

◇정 응 표 의원

- 영구차 개조비 120만원 계상 문제에 대하여는 작일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심한 토의를 거듭하였으며 영구차를 만들자는 근본 의의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독립채산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정밀한 숫자적 통계는 낼 수 없는 것이다.

◇김 남 진 의원

- 현금 집행부에서는 사망자에 대하여 그 계출(届出)이나 매장인허수속절차없이도 공동묘지에 매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통계조차도 못 내고 있는 것이 모순인 것이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제1조의 3항 3시간을 4시간으로 개정한 외는 개정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수정 동의하다.

- 재청..삼청이 있었다.

◇이 정 권 의원

- 내무위원회의 심의 경위 보충설명

◇김 경 인 의원

- 내무위원회 조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삼청이 있었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제4(조)를 응용시킬 것을 전제로 삭제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는가.

◇김 성 균 의원

-찬성발언

◇김 경 인 의원

- 제4조의 특별한 경우라는 문구 자체가 애매한 것이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김창희 의원 수정동의에 찬성발언

◇정 응 표 의원

- 제4조를 삭제함으로써 무질서한 폐단을 근절시키고 영세시민의 이용도수를 증가시키며, 극빈자에게는 긴급구호금 같은 것을 급여하여 영구차 사용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.

◇김 남 진 의원

- 제4조의 규정에 대한 예산조치도 안되어 있는 집행부의 제안 자체가 모순이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각 동의 표결선언
- 김 창 희 의원 (수정동의)
재석 14명 중 가 6표 부결
- 김경인 의원 동의
재석 14명 중 가 8표 가결

◇의장 김 삼 성

- 목포시 묘지 및 화장장 사용조례 중 개정안 상정선언

◇박 두 순 의원

- 본 건, 문사, 내무 위원회에서 심심토의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회부된 것이오니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

◇조 양 순 의원

- 현금 시내에 사설 묘지 아니 사설묘지 사용의 단속을 여하히 하고 있는가.

◇박 사회과장

- 이러한 사례는 대개 사후에 발견되는 관계로 곤란한 입장이나 그 연고자로 하여금 발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

※ 김창희, 김성균, 김상대, 임석희, 김일섭, 명남철 의원 퇴장 채석 8명

◇의장 김 삼 성

- 잠시 정회 선언

- 법정시간이 되도록 성원이 안되므로 금차 회기의 부의안건 11항목 중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된 차로 제94회 회기의 폐회할 것을 선언
(하오 4시 현재)

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.

단기 4292년 5월 20일

시의원 박 두 순

시의원 김 성 균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